

# 기안용지

보도	필요 · 불요
방법	자료제공, 목집, 피견(설명)
과장	국장

분류기호 문서번호	농축 27464 - <i>JP</i>	(전화번호 731-6322)	전결기정 4 조 1 항 국 장 전결사항		
처리기간	시 장				
시행일자	86. 1				
보존연한	<i>7</i> 1.16				
보 조 기 관	산업경제국장	"전결"	법 무 담 당 관  법무담당관		
	농축과장	<i>8/16</i>			
	가축위생계장				
기안책임자	<i>주쿠와</i>	'86. 1	조		
경유	각 안 참 조				
수신 참조					
제목	'86 가축검진 사업 실시				
제 1안	내부 결 제				
1. '86년도 우리시 가축방역사업의 일환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퍼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사육하는 젖소에 대한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<sup>의거</sup> 별안과 같이 고시하고 각안 시행코자합니다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                 심사 1986. 1. 20                  담당자 법제세장 법무담당관             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                 전결                  1986. 1. 20                  통제관             </td> </tr> </table>				심사 1986. 1. 20 담당자 법제세장 법무담당관	전결 1986. 1. 20 통제관
심사 1986. 1. 20 담당자 법제세장 법무담당관	전결 1986. 1. 20 통제관				
제 2안	고 시 "안"				
서울특별시 고 시 제 호					
가축 검진 사업 실시					
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사육하는 젖소에 대한 검진사업을 실시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					
고시한다					
1986. 1					
서울특별시 장					

1205-25(2-1)A(간)  
1981. 12. 18승인

정직 질서 창조  
901

190mm×268mm(인쇄용지 2급 60g/㎡)  
가 33-41, 1985. 6. 10.

1. 목 적 :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위생적인 육류 공급으로 가축이나 사람에 대한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함.
2. 지 역 : 서울특별시 가축사육지역
3. 대상가축명과 질병의 종류 젖소 : 소결핵, 부루세라 (MRT), 부루세라 (plato)
4. 실시기간 : 86. 2. 1 -- 11. 30
5. 실시방법 :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소 (축산물검사부) 가축방역관 과 공개업 수의사에게 위촉 실시
6. 기타사항 가. 소결핵 : 관내 전젖소에 실시하고 양성 및 의양성 발생시 농수산부예규 제 132호에 의거 조치 부루세라 : 미정젖소에 우선하고 의심나는 젖소에 실시
계 3안
수신 보건환경연구소장
참조 축산물검사부장
제목 동 건
1. '86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별첨 고시문과 같이 검진사업을 실시키로 하였으니 본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바람.
첨부 고 시 문 1부
계 4안
수신 농수산부장관
참조 가축위생과장
제목 동 건
1. '86년도 우리시 가축방역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별첨 내용과 같이 가축검진 사업실시안을 고시하고 시행하고자합니다.
첨부 : 고 시 문 1부



